국토교통부		보	도 자 료	#	
		배포일시	2021. 5. 31.(월) / 총 8매(본문5, 참고3)	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	
	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유상철, 사무관 박정원 • ☎ (044) 201-4655, 4662, 4657		
담당 부서	도시재생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박선영, • ☎ (044) 201-4903, 4907, 4909	, , , , ,	
	도시재생역량과	담 당 자	<ul><li>과장 오공명, 사무관 이선영,</li><li>☎ (044) 201-4911, 4912, 4913</li></ul>		
보도일시		2021년 6월 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6. 1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# 「지적재조시법 시행령」・「도시재생법 시행령」 국무회의 통과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\*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「지적재조사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「도시재생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  - \*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

### 〈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 >

- □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**공간적 범위,** 인력요건,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,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.
- □「지적재조사법」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수행방법 개선 및 민간 업무범위 마련

- 기존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업무는 지적측량수행자(한국국토정보 공사·민간업체)가 경쟁을 통해 수행해왔으나,
-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(시장·군수·구청장)이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고, 책임 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지적측량등록업체(이하 '민간업체')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사업공정의 35%~40%에 해당하는 <sup>①</sup>토지현황조사 및 조사서 작성, <sup>②</sup>경계점 측량 및 면적 산정(현황측량), <sup>③</sup>임시경계점 표지 설치, <sup>④</sup>경계점 표지 설치로 명확히 하였다.
- 한편, 올해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 선행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전체 지적측량분야 민간업체 185개 중 89개(48.1%)업체가 371개 사업 지구(약 133억원 수주)에 참여 중으로, '12~'20년 지적재조사 예산 1,391억원 중 120억원을 수주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된 수치이다.

#### ②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 마련

○ 이번에 도입한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요건으로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,000명, 권역별(2개 이상 광역시도) 단위는 200명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,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였다.

# ③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

- 책임수행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, 공동 협력하는 민간업체를 위한 업무지원\* 및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구개발・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.
  - \* ①지적재조사대행자 업무지원(행정반 설치 운영), ②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의 업무자문, ③측량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

- □ 「지적재조사법」**시행규칙 개정** 및 **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** 동시 제정
  -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**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** 및 **지정서** 서식을 **마련**하고,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**출입허가증**은 **휴대**가 **간편**하도록 공무원증 크기(가로55 mm×세로85mm)로 하도록 그 규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다.
  - 또한, 민간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,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행정· 현장·기술분야 등의 지원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「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」이 동시 제정ㆍ시행된다

【민간업체 지원활동】						
행정지원	현장지원	기술지원	교육지원			
·행정지원반 운영 ·소송·민원 대응	·현장 컨설팅 ·지역전문가 운영	· 측량SW 지원 · 측량장비 운용 등	·전문 교육과정 설치 ·측량·시스템 운용			

- □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"지적재조사 전담 책임 수행기관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7월 중 책임수행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
  -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 목표년도인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# 〈「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」일부 개정안 >

- □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,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「도시재생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은 6월 23일 부터 시행\*된다.
  - \*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, 혁신지구사업시행자 확대 등은 공포일(6.8)부터 시행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

-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, 도시재생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하였다.
-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론 및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, 시설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,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####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

-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\*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% 미만 변경,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다.
  - \*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
-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\*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,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,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, 지방의회 의견청취,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.
  - \*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,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산업·상업·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

- ③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
-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항만공사를 추가하여 공항,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 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\* 현재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철도공사 등이 혁신지구 사업시행 가능
- ④ 그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\*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으로 확대하고,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였다.
- \*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
- 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「도시재생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통해 도시 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박정원 사무관(☎ 044-201-4662,「지적재조사법 시행령」개정안) 도시재생정책과 박선영 사무관(☎ 044-201-4907,「도시재생법 시행령」개정안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< 책임수행기관 운영 안 > -

# LX와 민간사업자 경 쟁 체 제



책임수행기관 전담 민간사업자와 협력

#### < 책임수행기관(역할) >

- ◈ (상생·협력) 책임수행기관과 민간업계 간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업체 수행자에 대한 기술 교육지원을 수행 및 민간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확대 지원
- ◈ (공적기능 강화) 책임수행기관은 전담조직 설치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민간사업자 포용정책 등 책임수행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확대
- ◈ (안정적 사업추진) 매년 사업물량 증가분에 대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하되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디지털 지적구축의 사명감을 최우선하는 역할 부여

#### 【 책임수행기관 운영으로 달라지는 내용 】

구 분	현 행	개 선			
재 원	• 국가예산(측량수수료)	• 국가예산(위탁수수료)			
국고보조	• 국토부⇒지자체⇒LX/민간	• 국토부⇒지자체⇒책임수행기관 (일부 민간 재위탁)			
수행체계	• LX와 민간업체간 경쟁 및 지적재조사 측량·조사 대행	<ul><li>책임수행기관 위탁 수행</li><li>일필지측량 등 일부업무는 민 간에 재 위탁</li></ul>			
처리기간	• 사업지구별 약 1.5~2년 소요	• 사업지구별 1년 이내 완료			
효 과	• 민간업체 참여율 7% • 사업기간 장기화	<ul> <li>민간참여율 확대(7→35~40%)</li> <li>사업주기 단축(1.5~2→1년)</li> <li>공공일자리 창출</li> <li>2030년 목표기간 내 완료</li> </ul>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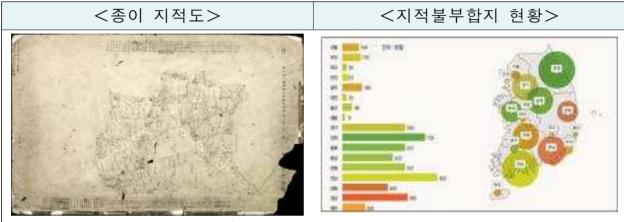
# ○ (역할분담 안)

지구계 측량	토지현황 조사 및 조사서 작성		경계점측량 및 면적산정		경계점 설치	경계 확정 측량	지적확정 예정조서 작성	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	성과물 납품
책임	민간사업자		책임수행기관						

# 참고 2

#### 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- □ (추진배경)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 등으로
  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\*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
  - \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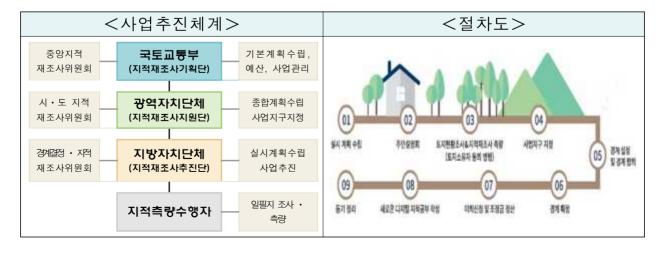


□ 현 지적공부는 **토지조사사업**(1910~1918년)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,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.8%(554만 필지)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

□ (사업내용)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**종이 지적공부**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

사업대상	사업기간	총사업비	근거법령
554만 필지	'12 ~ '30	1조 3천억 원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
(전국 3,743만 필지의 14.8%)	(19년간)	('12년 예타)	('11. 9. 16. 제정)

□ (추진체계 및 절차)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시·도(지구 지정),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지적측량수행자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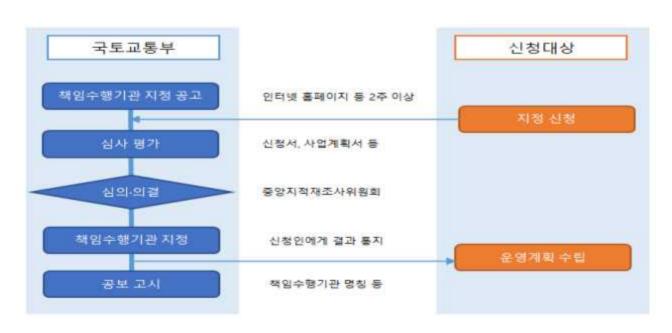


# 참고 3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공모 계획(안)

# □ 공모 개요

- (근거)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제1항
- (방법)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 공모 추진
- (대상) 한국국토정보공사, 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\*
  - \* 전담조직 및 측량장비를 갖추며, 측량기술자(지적분야) 1,000명(권역별 200명) 이상 상근
- (지정요건) 전국 사업범위 책임수행기관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 책임수행기관
- (지정기간) 지정일로부터 5년

#### □ 지정절차



#### □ 향후일정

○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공고 및 접수 : '21. 7.~8월

○ 책임수행기관 지정결과 공보 고시 및 협약 체결 : '21. 9월